「행복Together 정기예금」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"행복Together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"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적립식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

제 3 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 4 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.

제 5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(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시 1만원) 이상이며, 1인당 가입한도는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.

제 6 조 이자지급

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일에 일시지급합니다.

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제 7조의 우대금리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.

③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④ 예금의 만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 7 조 우대금리

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아래 우대금리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연 (0.3)%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.

1. 이 예금의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온라인뱅킹(인터넷/스마트폰)으로 KEB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약속메시지 작성 시
   (단, 메시지는 가입계좌별로 작성되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)
2. 은행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하나멤버스 앱에서 KEB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 후 발급된 금리우대쿠폰을 이 예금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등록 시
   (단, 금리우대쿠폰 등록은 가입계좌별로 등록되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)

제 8 조 일부해지

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,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(단,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백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.)

<부칙>

본 약관은 2015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며, 2015년 9월 1일 이후 기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합니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.

<부칙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